Dynamic BUSAN
City of Tomorrow

계약심사 사례집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목 차

Ⅰ 계약심사 업무현황

1 개념 및 필요성 ····· 1
2 직제 및 추진경과 ····· 2

Ⅱ 계약심사 운영

1 운영근거 ····· 3
2 대상기관 및 사업 ····· 3
3 업무처리 흐름 및 심사절차 ····· 4
4 심사기준 ····· 6

Ⅲ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1 공사분야 ····· 7
2 용역분야 ····· 8
3 물품구매·제조분야 ····· 9

Ⅳ 계약심사 추진실적

1 2010년 현황 ····· 12
2 2009년 현황 ····· 13

Ⅴ 계약심사 사례

1 토목분야 ····· 14
2 건축분야 ····· 33
3 녹지분야 ····· 47
4 전기분야 ····· 60
5 기계분야 ····· 66
6 용역분야 ····· 71
7 구매분야 ····· 96

Ⅵ 부 록

1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 102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117

Ⅰ 계약심사 업무현황

1 개념 및 필요성

◇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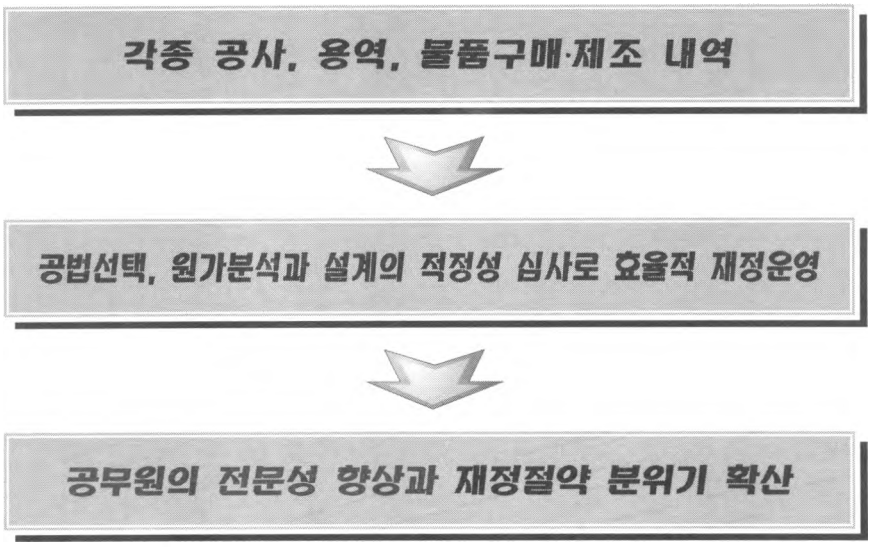

◇ 필요성

○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있어 정밀한 원가분석 및 창의적 공법도입 등 계약심사 기능 전문화로 예산절감을 향상하고,

○ 공사 전 과정(계획, 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해 최소의 비용으로, 설계내용에 대한 기능별, 대안별 경제성 검토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

○ 지반자치단체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재정절약 분위기 확산

2 직제 및 추진경과

◇ 직　　제 : 3담당(공사계약, 구매계약, 기술심사)

◇ 정 · 현원 : 정원 22명/ 현원 21명

구 분	계	공사계약심사담당		구매계약심사담당		기술심사담당	
정 원	22	9	행정·기술4급 1 토목5급 1 토목6급 2 건축6급 1 기계6급 1 전기6급 1 녹지6급 1 기능7급 1	6	행정5급 1 행정6급 2 기계6급 1 전산7급 1 행정7급 1	7	토·건5급 1 토목6급 3 건축6급 1 기·전6급 1 토목7급 1
현 원	21	9	기술4급 1 토목5급 1 토목6급 2 건축6급 1 기계6급 1 전기6급 1 녹지6급 1 기능8급 1	6	행정5급 1 행정6급 1 기계6급 1 전산7급 1 행정7급 2	6	토목5급 1 토목6급 1 건축6급 1 토목7급 2 기계7급 1

◇ 추진경과

○ 2008. 7. 7 :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조직신설

▷ 3담당 : 공사계약심사, 구매계약심사, 기술심사

○ 2009. 1. 1 :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

▷ 심사의 대상, 심사의 절차 등 규정

Ⅱ 계약심사 운영

1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규칙 제3617호 2008. 12. 3)

2 대상기관 및 사업

◇ 기관

○ 본청의 과·담당관 및 팀, 시의회사무처

○ 직속기관 및 사업소, 부산광역시 의료원

○ 자치구·군(시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 출연기관

◇ 사업

공 사	용 역	설계변경	물 품
예정금액 5억원 이상 (조경·전기·통신·설비는 3억원)	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계약금액 20억 이상공사 중 (계약금액 10%이상 증가)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

※ 공사, 공단, 부산광역시 의료원 및 시 출연기관의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는 1억원 이상

3 업무처리 흐름 및 심사절차

◇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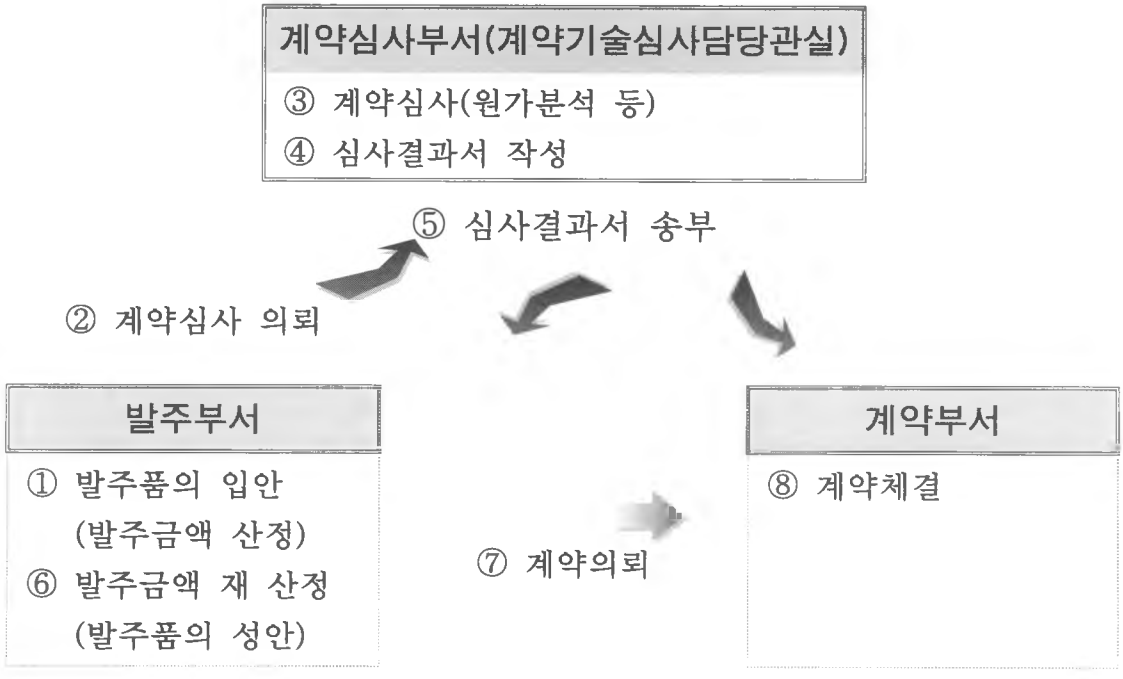

※ 계약기술심사 업무처리절차(VE포함)

◇ 심사절차

◈ 심사요청서 접수(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 발주부서 ⇒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 심사서류 검토(공사, 용역, 물품구매 심사담당별)
▷ 심사대상여부 ▷ 제출서류 누락여부 ▷ 기타사항

◈ 계약심사
▷ 예산확보 여부
▷ 설계서 검토
▷ 관련규정 대비 검토
▷ 기타세부사항 심사

◈ 서류미비 보완지시
▷ 계약심사담당관실⇒발주부서
◈ 서류보완 후 계약심사

◈ 심사결과 협의
▷ 요청부서 업무별 담당자(설계자) → 계약심사담당자
▷ 발주부서와의 협의(2차) → 이견이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 심사결과 보고
▷ 담당자 → 담당(담당사무관) → 계약기술심사담당관

◈ 심사결과 통보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심사완료
▷ 심사결과를 계약심사 정보시스템 입력(요청기관, 심사금액 등)

4 심사기준

대 상 사 업	심 사 기 준
건설공사용역 (설계 및 감리)	◆ 설계설명서 작성여부 ◆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 작성 적정여부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이행여부 ◆ 공사비 산출 적정여부 ◆ 설계 및 감리대가기준 적용 적정여부 ◆ 노임단가 적용의 적정여부 ◆ 측량용역대가기준 적용 적정여부 ◆ 국토개발품셈 및 영향평가법 적용 적정여부 ◆ 기초지질조사 등의 적용 적정여부
건설공사 (토목, 건축, 조경, 전기, 기계 등)	◆ 설계설명서 및 공사 시방서 작성 적정여부 ◆ 공사기간 산정 적정여부 ◆ 제비율 적용 적정여부 ◆ 원가계산 적정여부 ◆ 내역서 작성 및 산출근거(일위대가표) 적정여부 ◆ 노임단가 및 각종 자재단가 적용 적정여부 ◆ 설계도 작성 적정여부 ◆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공사 적용 적정여부
건설공사 설계변경	◆ 공법 또는 설계변경 사유 타당성 적정여부 ◆ 물량변경 내용의 적정여부 ◆ 변경단가 적용의 적정여부 ◆ 변경 원가계산 적정여부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적용 적정여부
일반용역(학술용역)	◆ 원가계산 적정여부 ◆ 용역기간 산정 적정여부 ◆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 작성 적정여부 ◆ 인건비 적용 적정여부
물품구매·제조	◆ 산출기초 조사서(원가계산서) 작성 적정여부 ◆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적정여부 ◆ 거래실례가격 적용 적정여부

Ⅲ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

1 공사분야

◇ 공사 분류의 근거

○ 계약심사 대상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근거로 분류
○ 공사의 분류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 개별법령에 따라 분류

◇ 개별공사의 개념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
○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식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함.
○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함

◇ 계약심사 요청 구비서류

○ 계약심사 요청서
○ 설계내역서(시방서,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자재단가 비교표, 일위대가서 포함, 비목별계산서, 기계경비산출서 등)
○ 기타참고자료(방침 또는 계획서, 구조계산서, 견적서 등)
○ 설계도서(관련 도면)

◇ 심사내용 및 적용규정

○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지방계약법 이외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기타 규정 등)
○ 표준품셈(건설,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실적공사비 등 기타 원가산출근거
○ 원가심사시 기준 적용단가(기 심사내용 포함) 조사
  ▷ 재료비 : 거래실례가격, 통계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 등 낮은 가격
  ▷ 노무비 : 통계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경 비 : 원가계산을 위한 제경비 항목 중 계약목적물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경비 계상
○ 서류상 오류사항 등

2 용역분야

◇ 용어의 정의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용역이라 함은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상 용역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그 외 일반용역으로 분류 함

◇ 용역의 종류

○ 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
  ▷ 기술용역은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감리대가기준, 측량용역 대가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학술연구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

○ 일반용역

▷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 일반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 계약심사 요청 구비서류

○ 계약심사 요청서(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별지 서식)

○ 원가계산서, 과업지시서

○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 인쇄물산출 기초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 기타 참고자료(방침 또는 계획서, 견적서 등 심사보조자료)

◇ 심사내용 및 적용규정

○ 관련규정 검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지방계약법이외의 내용은 국가계약법 준용)

▷ 원가계산요령 등 기타규정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측량용역대가 기준 등

▷ 표준품셈(건설공사, 건축, 전기, 기계·설비, 국토개발), 기타 원가산출근거 등

○ 원가심사 기준적용단가 조사(조달청, 시중물가지, 견적 등)

○ 서류상 오류사항 검토

○ 조사된 기준적용단가와 설계 내역서 비교 검토

3 물품구매·제조분야

◇ 물품의 정의 및 분류

○ 물품은 물품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 물품의 분류는 소관 물품의 사용과 처분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 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함

◇ 제조·구매의 개념 및 계약관련사항

○ 현행 법규상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명확히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당해 제조업자만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구매의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그 자격이 있음

◇ 계약심사 요청서류

○ 물품계약심사 요청시 모든 물품 제조·구매 건은 공통적으로 규정된 서식인 계약심사요청서로 작성하고, 산출기초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개별 유형건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요청

○ 물품구매(완제품)

▷ 계약심사 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 구체적 규격 및 사양서

○ 제조 가공품

▷ 계약심사 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 구체적 규격 및 사양서, 제조원가 계산서

○ 수입물품

▷ 계약심사 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 수입원,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참고자료

○ 운송보관

▷ 계약심사 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 운송수단(차종) 및 보관수단, 장소

▷ 운송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

○ 수리

▷ 계약심사 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 수리명세, 수리단위별 내역서

○ 임차

▷ 계약심사 요청서, 산출기초조사서

▷ 임차대상·기간 및 장소·임차조건 등

◇ 제조·구매 계약심사 가격결정 기준

○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심사 가격을 결정하는데 통상 완제품의 구매시 적용

○ 거래실례가격 조사 결정방법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책자 또는 인터넷)

▷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시중물가지)

▷ 담당자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 확인한 가격(견적서 등)

○ 원가계산가격

▷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하는 원가를 계산하여 적용

▷ 원가계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이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로 제정되어 있음

▷ 인쇄물의 원가계산은 조달청으로부터 제공되는 인쇄기준요금에 의하여 각 기관이 원가계산방법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음

○ 감정가격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 건물, 불용품 매각 등에 이용함

○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감정평가조차 할 수 없을 경우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

Ⅳ 계약심사 추진실적

1 2010년 현황

○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류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전 체	779	1,363,602	1,307,463	56,138	4.1
공 사	301	1,105,341	1,060,070	45,270	4.1
용 역	243	225,553	215,601	9,951	4.4
물 품	235	32,708	31,792	917	2.8

○ 기관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류	건 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779	1,363,602	1,307,463	56,138	4.1
본 청	146	75,920	71,793	4,126	5.4
사업소	187	344,410	326,433	17,977	5.2
시 군 구	246	274,232	260,591	13,641	5.0
투자기관	200	669,040	648,646	20,394	3.0

2 2009년 현황

○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류	건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전 체	887	1,321,347	1,252,667	68,679	5.20
공 사	313	968,905	912,206	56,699	5.85
용 역	262	239,374	231,133	8,240	3.44
물 품	312	113,068	109,328	3,740	3.31

○ 기관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류	건 수	심사요청액	심사완료액	절감액	절감율
계	887	1,321,347	1,252,667	68,679	5.20
본 청	157	64,755	61,691	3,064	4.73
사업소	202	232,547	222,379	10,168	4.37
시 군 구	279	271,136	253,237	17,898	6.60
투자기관	249	752,909	715,360	37,549	4.99

Ⅴ 2010년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 토목분야

○○터널 접속도로 건설공사

❑ 사업개요

- ❍ 사업규모 : 도로건설 L=270m B=17.9~50m(4~6차선)
  - ▸ 고가도로(소수주형교) L=270m B=17.9
  - ▸ 도로확장 L=270m B=20→40~50m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3,779,800	13,403,000	△ 376,800	△ 2.73

❑ 심사내용

-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는 단가로 조정
- ❍ 실적공사비 적용 부적정
  - ▸ 무근, 철근콘크리트깨기의 단가는 철근절단, 들어내기, 소운반이 포함되므로 기계90+인력10%는 기계100%로 조정
- ❍ 단가 산출품 조정
  - ▸ 혼합폐기물의 매립:소각처리 비율을 50:50으로 계상하였으나 60:40으로 조정 적용하고, 실제 시공시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 2010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단가

○○○호안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호안정비 및 보강 L=854m
- ▸ 부대공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4,176,000	21,437,694	△ 2,738,306	△ 11.32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는 단가로 조정

❍ 단가 산출품 부적정

- ▸ 피복석 및 사석의 자재비, 운반거리, 운반속도 과다로 조정
- ▸ 데크설치 및 조립품은 잡철물제작설치에서 (건축)경량형강철골 조립설치품으로 조정

❍ 기타사항

- ▸ 공사용자재는 3천만원 이상이면 품목을 관급으로 전환하고, 품질시험비 등은 제경비 미반영이 타당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강합성형 상자교 L=200m B=18.7m
- ▸ 교각 N=3기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4,926,342	14,639,526	△ 286,816	△ 1.92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는 단가로 조정

❍ 단가 산출품 부적정

- ▸ 품질관리차량비는 제경비 항목를 적용하지 않을시 별도 계상 반영가능
- ▸ 철재조립식 가설사무실, 창고, 시험실은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로 적용하고 손율로 계상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하수관거신설(확충)공사[○○처리구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오수관로(D100～500mm) L=6,915m
- ▸ 배수설비 900가구
- ▸ 폐기물처리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5,137,000	14,793,189	△ 343,810	△ 2.27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는 단가로 조정

❍ 단가 산출품 부적정

- ▸ 터파기 시 기계50+인력50%는 하수도공사 현장여건을 감안하드라도 기계70+인력30%로 조정
- ▸ 차선도색 때 차로밑그림은 신설포장이나 전면덧씌우기 경우에만 적용
- ▸ 폐기물처리는 관내 20km로 반영하였으나, 현장과 가장 가까운 사업장으로 처리

❍ 제경비 산정 부적정

- ▸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는 "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부지조성 A=47,200㎡(버스 321대, 승용차 48대)
- ▸ 사무동(지상3층) 1동, 정비동(지상2층) 1동, 가스충전소
- ▸ 전기, 냉난방, 위생, 가스배관, 소방시설, 조경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9,194,160	8,637,541	△ 556,619	△ 6.05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는 단가로 조정

❍ 단가 산출품 부적정

- ▸ 토공 절취, 터파기, 되메우기 시 장비 사이클타임(22sec(180°)→20sec(135°)) 과다 조정
- ▸ 석축헐기 시 인력50+기계50%는 재사용하지 않으므로 기계100%로 조정적용
- ▸ H-Beam설치 및 철거시 비계공3인은 1인으로 조정적용

❍ 제경비 산정 부적정

- ▸ 환경보전비를 계상하고 별도 세륜시설설치 비용계산은 부적정하므로 조정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00농로확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 도로정비 L=740m, B=5.0m
- ▸ 수로정비(3.0× 1.0~1.2) : L=740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681,000	650,294	△30,706	△ 4.51%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는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토공작업 인력 및 기계 작업품 비율 조정
- ▸ 잡석깔기 품 표준품셈에 현장조건에 맞추어 조정
- ▸ 현장도착 자재 이중계상된 운반비 삭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0주변 가로정비 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 도로정비 L=3,600m, B=3m
- ▸ 보판정비 및 조형물 설치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132,900	3,878,900	△254,000	△ 6.15%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토량환산 계수 조정
- ▸ 인력 치핑품은 기계치핑 품으로 조정
- ▸ 가로수 뿌리 전정작업 품 조정
- ▸ 석재다듬이 품은 가격자재대에 포함된 공정임으로 삭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0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 공영주차장 건립 A=3,940㎡
- ▸ 주차면:103면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300,000	1,239,000	△61,000	△ 4.69%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구조물터파기(리핑암 및 발파암) 장비로 설계된 소형핸드브레이커(25kg)는 현장여건을 감안 브레이카(0.7㎥)급으로 조정
- ▸ 잔디블록포장시 설치인력중 건설표준품셈에 계상인력이 없는 작업반장은 이중계상되어 삭제 조정
- ▸ 수목의 할증율 조정.
- ▸ 대나무 식재 인력은 설계지침서 기준에 의거 조정

❍ 제경비 조정

- ▸ 환경보전비 적용요율을 도로(교량,터널,활주로)요율(0.9%)을 적용하였으나, 기타공사요율(0.3%)을 적용함이 타당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환경보전비 적용요율 계상 및 사용기준

00길 도로개설 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 도로개설 L=120m, B=25m
- ▸ 사면보강 L=85m, H=1.0~8.0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00,000	951,280	△48,720	△ 4.87%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Anchor 천공시 작업능력 조정
- ▸ PC 강선 제작삽입 품은 표준품셈기준으로 현장조건에 맞추어 조정
- ▸ 시멘트 구입시는 운반비는 삭제하고 현장도착가격으로 구매 조정
- ▸ 관목류 식재(철죽류외) 품 조정

❍ 제경비 조정

- ▸ 일반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작성요령"에 의거 요율적용
- ▸ 환경보전비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는 등 직접경비로 산정하였으므로 삭제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일반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

00천 하부 침수예방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 하수BOX 상부슬라브 승상(h=0.7m) L=18.8m
- ▸ 철도횡단 통로BOX 설치(FRONT-JACKING, 2.9×2.0) L = 26.0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000,000	1,895,270	△104,730	△ 5.24%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석축헐기 시 인력철거품은 현장여건을 감안 기계(Backhoe, 0.4㎥) 50%+인력50%로 조정
- ▸ 천공(T-4) 1hr당 작업량은 "2010년 건설표준품셈" 5-8(천공) 기준에 의거 조정
- ▸ H-pile 박기품 적용 시 천공 후 H-pile 박기임을 감안 작업효율 조정
- ▸ 하수준설은 흡인식 준설에서 박스내 소형기계 작업이 가능한 점을 감안 경운기+백호우 준설로 조정
- ▸ 에폭시 방식 면적중 타일부분은 제외하고, 실지 시공가능한 부분만 적용

❍ 제경비 조정

- ▸ 환경 보전비 산정시 공사 분류상에 적합하게 요율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

00교육문화회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진입도로 개설 L=58m B=12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420,000	2,271,000	△149,000	△ 6.16%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Soil Nail 천공 작업효율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준에 의거 조정

▸ Nail 제작 및 그라우팅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준에 의거 조정

▸ 교목류 식재는"건설공사 설계지침서"의 기준에 의거 조정

▸ 산석옹벽 정착물 설치를 위한 경암부분 천공물량 조정

❍ 제경비 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조정.

▸ 환경보전비는 세륜시설 등 직접경비를 산정하였으므로 제비율 원가산정은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

00유치부지 진입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도로개설 L=619m B=10~17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980,400	1,887,900	△92,500	△ 4.67%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보도헐기는 인력 헐기에서 기계(백호우)헐기로 조정

▸ 잔디 식재품에 소운반비 이중계상 조정

▸ 오수관거시험 및 검사비 조정

▸ 강관동바리는 교량용동바리를 암거용동바리로 조정

▸ 물푸기(양수기) 시간은 실 사용기간으로 조정

▸ 데크설치 견적처리비용은 산출단가로 조정

❍ 제경비 조정

▸ 이중 계상된 환경보전비 삭제.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0천 일원 재해복구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하천정비 : L=691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294,800	1,220,800	△74,000	△ 5.72%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식생호안블럭(1000× 1000× 260)붙이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준에 의거 설치품 조정

▸ 식생호안블럭 설치 시 복토품이 이중계상 조정

▸ 돌계단놓기 시 작업반장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적용기준이 없으므로 삭제 조정

▸ 폐자재운반시 차량운반 속도 조정

❍ 제경비 조정

▸ 이중 계상된 환경보전비 삭제.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환경보전비 계상 및 사용기준.

00주변 침수지 해소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 펌프장(6.3m× 15.25m× 3.55m)설치 N=1개소
- ▸ 주철관(D=1,000) 부설 L=291.8m
- ▸ Box(1.5× 1.5m) 설치 L=19m
- ▸ 맨홀(H=5.0m) 설치 N=1개소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386,790	1,231,462	△155,328	△ 11.20%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는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STRUT,사보강,BRACKT의 잡철물 제작품 조정
- ▸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품이 건설표준품셈 기준보다 과다 계상되어 조정
- ▸ 지하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합판거푸집 사용횟수 조정(3회→4회)
- ▸ 교통정리원을 공정표에 의거 실 사용기간 00개월로 조정

❍ 제경비 조정

- ▸ 환경보전비 적용요율 조정.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과다 계상분 조정
- ▸ 일반관리비 적용요율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0교 주변 선형개량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 교량설치 : L=70m, B=15m
- ▸ 접속도로 : L=338m, B=15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075,900	3,897,400	△178,500	△ 4.40%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난간철거는 인력설치를 기계철거로 조정
- ▸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품은 건설표준품셈의 기준에 의거 조정
- ▸ 앵커체 가공조립 · 삽입품은 건설표준품셈의 기준에 의거 조정
- ▸ 삼중벽관 접합 및 부설품은 건설표준품셈의 기준에 의거 조정
- ▸ 일반옹벽(L형)의 철근가공조립은 건설표준품셈의 기준에 의거 조정
- ▸ 교각점검시설 설치품중 인력 이중계상부분 조정
- ▸ 폐기물 처리비 과다계상부분 조성

❍ 제경비 조정

- ▸ 이중 계상된 환경보전비 삭제.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0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도로구조 개선 L=2.50km, L=20~23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5,587,260	5,044,450	△542,810	△ 9.72%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잔토처리 시 현장에서 사토장까지 차량 운반속도 조정

▸ 석축헐기시 인력철거품은 기계(장비) 헐기로 조정

▸ 지게 소운반 시 1회 운반량은 건설표준품셈의 기준에 의거 조정

▸ 잔토 집적상차 시 인력 소운반품은 불필요함으로 삭제 조정

▸ 조경석 쌓기품은 자역석 쌓기품으로 조정

▸ 보도포장 시 모래부설 품이 이중계상되어 조정

❍ 제경비 조정

▸ 환경보전비 계상요율 조정.

▸ 장물 이설비는 제경비 계상부분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환경보전비 및 지장물 이설 제경비 계상 및 사용기준.

00 으뜸로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가로환경정비 L=550m, B=25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5,664,520	5,169,801	△494,719	△ 8.73%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사용장비 중 불필요한 콘크리트 믹셔장비는 삭제 조정

▸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품은 건설표준품셈의 기준에 의거 조정

▸ 보도포장 판석포장 품은 건설표준품셈의 기준에 의거 조정

▸ 보도포장 설치하는 화강석 절단품은 자재대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 조정

▸ 배전기커버, 버스베이, 벤치, 휴지통, 택시안내판, 자재대 견적서에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계상부분 삭제 조정

▸ 식혈작업으로 현장여건상 진동롤러, 살수작업은 필요치 않으므로 삭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0일원 역사테마 거리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보도 조성 L=0.99km B=2.5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384,700	1,256,830	△127,870	△ 9.23%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토류판 설치 및 철거품은 건설표준품셈의 기준에 의거 조정

▸ 판석포장 품은 기초 모르탈 두께를 감안하여 건설표준품셈의 기준에 의거 조정

▸ 유리섬유복합관 접합 및 부설품은 건설표준품셈의 기준에 의거 조정

▸ 철근콘크리트공사 지하에 매설되는 합판거푸집 사용회수는 3회→4회 조정

▸ 조형물 설치 시 잡철물제작 및 설치품은 이중 계상되어 조정

▸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처리장을 기준으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0천 하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 저수호안공 L=1,117m
- ▸ 교량설치 N=1개소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024,000	918,300	△105,700	△ 10.32%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영산홍 식재시 설치품은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기준에 의거 식재인력품 조정
- ▸ 잔토처리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처리장을 기준으로 산정 조정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인원은 통제인력 2인→1인으로 조정
- ▸ 사급자재는 관급자재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2 건축분야

00임대주택 개보수공사

❑ 사업개요

- ❍ 사업규모 : 영구임대주택 2개 지구 단지내
  - ▸ 부대시설 개선, 세대내 환경개선(도배,장판 등)
  - ▸ 복도 창호 설치, 옥상 바닥 방수 등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3,290,876	3,260,964	△ 29,912	△ 0.9

❑ 심사내용

- ❍ 설계변경 단가 조정
  - ▸ L 형 측구용 거푸집 및 휀스 줄기초 거푸집을 신규비목으로 산출(41,167원/㎡) 하였으나, 기 계약단가 중 합판거푸집단가(6회, 10,425원/㎡)를 적용함.
- ❍ 적용품 조정
  - ▸ 보도콘크리트포장의 품은 표준품셈(6-1-3)에 따라 적용 (콘크리트공 0.15 → 0.19인, 보통인부 0.27 → 0.13인)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00전망대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철골조 지상3층, 연면적 1,308㎡
- ▸ 사무실, 전시실, 자료실, 전망대 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3,497,546	3,429,570	△ 67,976	△ 1.94

❑ 심사내용

❍ 가설공사 품 적용

- ▸ 가설공사 중 먹메김, 건축물현장정리의 면적을 건축물의 표면적 등 (1,504㎡)으로 계상하였으나 건축물의 연면적(1,308㎡)으로 조정 적용함.

❍ 적용품 조정

- ▸ 미장공사 중 내벽 몰탈바르기(18mm)는 현장 공정을 감안하여 표준품셈 (16-1.3)에 의거 그 품을 조정(미장공 및 보통인부 0.13 →0.08인)하고, 외벽 24mm는 18mm로, 천정몰탈바르기는 콘크리트 면처리로 조정 적용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OO안전센터 재건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5층 연면적 934.32㎡
-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방서119안전센터)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417,205	1,365,107	△ 52,098	△ 3.68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 옥상 방수공사중 시멘트액체방수위에 시공하는 보호몰탈 공정은 무근콘크리트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방수공사 중 시멘트액체방수(2종)은 표준품셈(13-7-2)에 의거 그 품을 적용함.
- ▸ 화장실 및 세면장의 시멘트액체방수위에 시공하는 우레탄방수공정은 중복공정이며, 그 위에 시공하는 보호몰탈 공정은 타일용 붙임몰탈이 있으므로, 우레탄방수공정과 보호몰탈 공정은 삭제함.
- ▸ 타일공사 중 타일떠붙임(39호표)은 표준품셈(11-4.2)에 의거 그 품을 적용(타일공 : 0.25 → 0.18인/㎡, 보통인부 : 0.17 → 0,11인/㎡)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00농산물도매시장 보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옥상 및 1층 균열부 보수공사
- ▸ 균열부 보수, 방수공사, 기타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500,000	494,230	△ 5,770	△ 1.15

❑ 심사내용

❍ 제경비 조정

- ▸ 본 공사는 기존 건축물 주차장 바닥부분의 마감재 보수공사로서 안전관리 요소가 경미한 공정임을 감안하여 안전관리비의 요율을 기타공사의 요율로 조정 적용함.
  - 안전관리비 : 2.48%(일반건설) → 1.24%(기타)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OO대극장 리모델링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대극장 객석, 무대, 프로세니움아치 확장 등
-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무대분야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3,400,984	3,258,347	△ 142,637	△ 4.19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 철거공사 중 경량칸막이철거, 세면대철거, 양변기철거, 소변기철거의 건축목공품은 그 공정상 제외함.
- ▸ 철거공사 중 경량철골천정틀 철거는 표준품셈(21-1.1)에 의거 특별인부(0.1→0.05인) 및 보통인부(0.05 →0.25인) 품을 조정함.
- ▸ 목공사중 합판깔기/객석(내수합판12mm)는 플로링설치에 포함된 공정이므로 삭제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00전시시설 제작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시연출계획 및 전시콘텐츠 구성을 통한 전시공간 구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668,820	1,633,066	△ 35,754	△ 2.14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가설공사 중 현장정리정돈 공종은 표준품셈(2-10)에 의거 보통인부 품을 조정(0.081→0.07인)하고, 준공청소 공종은 위 현장정리정돈공종에 포함되므로 삭제하여야 함.

▸ 벽체공사 중 실사출력 및 취부(1-68호표)는 표준품셈(20-3.1)에 의거 특별인부 (0.12 → 0.02인)품을 조정함.

▸ 철거공사 중 벽체철거(석고보드, 목재)공종은 표준품셈(21-1.2)에 의거 1-15호표(특별인부 0.024→0.006인, 보통인부 0.01→0.02인), 1-16 호표(건축목공 0.045→ 0.006인, 보통인부 0.025 → 0.02인)으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00구축물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주경기장, 야구장 구축물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079,518	785,103	△ 294,415	△ 27.27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스텐드 엑스판션죠인트(제3호표에 대한 30호표)의 실링제 수량을 실 소요 수량으로 조정(6.72 → 3.0L)

▸ 조적조 균열(제9호표)의 품 중에서 방수공이 계상되었으므로 특별인부 품(0.05인)은 삭제.

▸ 철근노출 및 녹오염(제11호표)의 산정 착오를 정정(세라믹코트도포공정 삭제)함

▸ 탄소섬유보강(제18호표)의 견적처리한 품을 표준품셈(1-3.4)에 의하여 유사한 공종을 적용하여 조정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00창고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지상1층 연면적 562.38㎡
- ▸ 수산물도매시장 어상자 보관창고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539,066	534,152	△ 4,914	△ 0.91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 가설공사중 가설사무소, 가설창고는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 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가설울타리 또한 공사현장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삭제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OO리모델링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상3층 연면적 434.07㎡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87,184	467,802	△ 19,382	△ 3.98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가설공사 중 가설울타리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내부 말비계는 면적단위가 아닌 대수로 조정(391㎡ → 12대)하고,
강관비계매기는 실 소요수량으로 조정(748 → ?㎡)하고, 먹메김은 실 소요수량으로 조정(434 →259㎡)함.

▸ 수장공사 중 DRY-WALL(114,115호표)의 설치품을 표준품셈(20-2.1)에 의거 조정(철공 0.1→0.06인, 내장공 0.1→0.06인)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OO시설개량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부산도시철도 17개역 엘리베이터 등 공사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9,985,710	29,916,710	△ 69,000	△ 0.23

❑ 심사내용

❍ 제경비 조정

▸ 엘리베이터 설치공사(DPG) 중에서 엔지니어링 FEE 및 기타경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삭제함.

- 3공구 : 남산동역 등 4개역 8개소
- 5공구 : 구남역 등 9개역 20개소.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00공원 등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송일정(정자)보수 1식
- ▸ 시설물공, 포장공, 조경식재공, 부대공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23,054	374,632	△ 48,422	△ 11.45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 석공사 중 화강석기둥설치는 드잡이공사부분에 중복되므로 삭제함.
- ▸ 목공사 중 기둥의 가공품은 드잡이공사부분에 중복 포함되므로 삭제하고 재료비 착오 정정함.
- ▸ 드잡이공사부분의 가설 결박용 목재에 손율(50%)을 적용하고, 별도 계상된 식대를 삭제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00시설 개보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철골조 지상1층 연면적 600㎡
- ▸ 정고동 신축, 본부동 전기시설교체, 계류시설설치, 슬립웨이설치.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348,700	295,999	△ 52,701	△ 15.11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 가설공사 중 건축물현장정리품은 표준품셈(2-10)에 의거 보통인부 품을 철골조로 조정(0.15 →0.07인)하고, 먹메김은 표준품셈(12-1)에 의거 건축목공품을 공장용으로 조정(0.0325→0.003인)함.
- ▸ 토공사 중 잡석깔기 지정의 큰달구 다짐을 플레이트콤팩트다짐으로 조정함.
- ▸ 철골공사 중 철골가공조립(14,15호표)의 철골공수는 표준품셈(7-1-2)에 의거 작업난이도를 조정(0.875 → 0.8) 적용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00건축물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옥외화장실 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7,539,404	16,879,230	△ 660,174	△ 3.76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가설공사 중 내부수평비계를 이동식 강관 말비계로 조정 적용함.

▸ 토공사 중 터파기와 되메우기 단가를 토목단가로 조정 적용함.

▸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스탠드외벽의 곡선으로 적용한 거푸집(1회)을 직선구간이므로 유로폼(3회)으로 변경 조정함.

▸ 방수공사 중에서 비노출 우레탄방수의 품을 조정 (방수공0.08 → 0.06인, 보통인부 0.1 → 0.03인) 적용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OO사회복지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656.29㎡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126,125	4,009,738	△ 116,387	△ 2.82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가설공사 중 수평내부비계를 조립말비계로(40대) 조정하고, 현장정리 및 먹메김의 수량은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조정함.

▸ 미장공사 중 몰탈바르기(바닥100mm)는 구체조정으로 바름두께를 조정(100mm →30mm)하고, 벽 몰탈바르기(내외벽 18mm)와 천정 몰탈바르기(천정9mm) 를 면처리로 조정함.

▸ 도장공사 중 수성페인트칠(외벽3회)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2회로 조정 적용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3 녹지분야

00지구 이주단지조성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해송 등 813본 식재
- ▸ 시설물설치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400,000	1,193,000	△ 207,000	△ 14.79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는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조경수목 중 교목의 경우 할증 5% 제외
- ▸ 전망데크 및 자전거 거치대의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 되어 있어 자재별 단가 산출 및 경량형형강철골조 품을 적용하여 조정
- ▸ 수목식재 품 과다 적용 부분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0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454㎡
- ▸ 식재공사 : 굴거리나무 외 18종 5,726본 식재
- ▸ 기타공사 : 포장공, 토공, 오수공 등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670,914	631,904	△ 39,010	△ 5.81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아스팔트 포장절단의 경우 시간당 작업량은 2차로기준 600m적용
- ▸ 아스팔트 표층의 경우 시공폭이 3m이상이므로 1일 작업량 2,000㎡를 5,000㎡로 조정
- ▸ 컨테이너사무실 및 창고 설치의 경우 납품 장소도 이므로 비계공 및 보통인부 제외
- ▸ 등의자 및 평의자 설치의 경우 재료비에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치품은 제외
- ▸ 초화식재의 경우 식재조건 보통을 양호로 적용하여 조정
- ▸ 공원등 및 상징열주의 설치를 인력에서 기계시공으로 변경
- ▸ 공원등 및 상징열주의 램프, 안정기, 기초앵커 내부배선 가격을 별도 계상하였으나 등주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 제경비 조정
- ▸ 누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4천만원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00~00간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산책로조성 : 데크 455m, 계단 2개소, 난간 721경간
- ▸ 기타부대공사 :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287,000	1,109,000	△ 178,000	△ 13.83%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터파기(암)의 경우 굴삭기(대형브레이커)가 작업장소 내 진입 가능하므로 시간당 작업량은 암파쇄 품을 적용($3.8m^3/hr \rightarrow 5.5m^3/hr$)
- ▸ 터파기(기계90%+인력10%)의 경우 인력품은 절취품을 적용
- ▸ 되메우기의 경우 기계90%+인력10%를 기계 100%로 적용
- ▸ 마대쌓기 및 헐기의 경우 헐기 품은 잔토처리 적재비에 계상되어있으므로 제외
- ▸ 흙운반의 경우 현장에서 덤프트럭 상차 운반이므로 적재 품은 제외
- ▸ 데크설치 시 잡철물 제작 설치는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품을 적용하여 조정
- ▸ 가도설치를 위한 마대쌓기의 경우 가도계획 평면도에 의한 전체를 마대쌓기로 산출하였으나 해안측면 쌓기로 재 산출
- ▸ 평의자 설치비는 재료비에 설치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치품은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OOO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중앙분리대 화단설치 : 경계석 설치 808m, 기타 1식

▸ 수목식재 :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32,545	404,814	△ 27,731	△ 6.4%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터파기(기계90%+인력10%)의 경우 인력품은 절취품을 적용

▸ 마사토 부설 인력품은 인력터파기의 되메우기품을 적용(0.1인)

▸ 밸브용소켓설치 및 엘보설치품은 관접합 및 부설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 단관접합 및 부설의 경우 6m당 적용되는 품임으로 m당으로 환산

▸ 자동관수시설 설치에 따른 밸브설치품은 제외하고 관접합 및 부설품은 본당으로 조정

▸ 초화류 식재의 경우 식재조건 보통을 양호로 적용

▸ 교통신호수 및 현장정리인은 공사기간(60일) 중 실 필요일수에 따라 조정

❍ 제경비 조정

▸ 안전관리비의 경우 조경공사는 특수 및 기타공사에 해당하며 추정가격 5억 미만이므로 1.24%를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000길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중앙분리대 화단설치 :854m(B2.8m~4.5m), 경계석설치 1,225m
- ▸ 수목식재 :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717,425	680,512	△ 36,913	△ 5.14%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터파기(인력)의 경우 인력품은 절취품을 적용
- ▸ 아스팔트 포장절단의 경우 시간당 작업량은 2차로기준 600m적용
- ▸ 경계석설치품은 경계석의 체적을 환산하여 적용
- ▸ 관접합 및 부설의 경우 6m당 적용되는 품임으로 m당으로 환산하고 접합 및 부설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추가 설치품은 제외
- ▸ 관목류 식재의 경우 단식품을 적용하였으나 군식품으로 조정

❍ 제경비 조정

- ▸ 산재보험료는 201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에 의거 3.7%적용
- ▸ 건강보험료는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1.49%를 적용(1.40%→1.49%)
- ▸ 연금보험료는 추정금액 5억원이상 공사에 해당하므로 2.43%를 적용
- ▸ 안전관리비의 경우 조경공사는 특수 및 기타공사에 해당하며 추정가격 5억미만이므로 1.24%를 적용
- ▸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추정금액이 5억원이상 공사에 해당하므로 2.3%를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000 가로수 불량목 교체 및 보식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가로수식재 : 은행나무외 1종 207본 식재, 224본 이식
- ▸ 가로수벽화단 : 애기동백외 2종 9,570본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83,900	435,940	△ 47,960	△ 9.91%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식재기반조성을 위한 사토(토사)의 경우 토질이 양호함으로 버킷 계수 및 작업효율을 보통에서 양호로 조정하며, 대물량 사토운반 덤프트럭은 15톤을 24톤으로 조정
- ▸ 수목운반의 경우 5톤 트럭크레인을 10톤 트럭크레인으로 조정
- ▸ 경계석설치품은 경계석의 체적을 환산하여 적용
- ▸ 수목식재 시 객토공정은 식재기반조성이 별도 산정되어 있으므로 제외
- ▸ 수목 및 초화식재 품은 기준에 의거 조정

❍ 제경비 조정

- ▸ 고용보험료(0.69%), 건강보험료(1.59%), 연금보험료(2.48%)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00 산림재해 예방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토　　공 : 절취 197㎥, 터파기 551㎥, 석축헐기 23㎥
- ▸ 구조물공 : 게비온 15m, 자연석쌓기 126m
- ▸ 포 장 공 : 사고석포장 343㎡, 경화마사토 80㎡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72,600	417,200	△ 55,400	△ 11.7%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자연석쌓기는 산림 내 토사유실 예방을 위해 시공하는 것으로 정원석쌓기 품을 적용하였으나 전석쌓기로 조정
- ▸ 강관 및 맹암거 부설품은 본당(8m)기준임으로 m당으로 환산 적용
- ▸ 레미콘 철근콘크리트 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유로폼설치, 합판거푸집 설치, 강관동바리설치품은 품셈기준에 의거 조정
- ▸ 석재교량마감은 견적처리하였으나 공정별로 표준품셈 기준에의거 재 산정
- ▸ 마대쌓기 및 헐기품은 인력헐기를 기계(굴삭기)헐기로 조정
- ▸ 콘크리트면 치핑품은 인력품에서 기계품으로 조정
- ▸ 게비온옹벽 뒤 절취부분 최소화로 절토량 및 뒷채움자갈 수량 감소

❍ 제경비 조정

- ▸ 환경보전비 적용요율을 도로에서 기타공사로 조정(0.9%→0.3%)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00 도시숲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수목식재 : 노각나무외 3종 6,950본
- ▸ 포장공사 : 노면복원 등
- ▸ 편의시설설치 : 주민운동시설, 조형평상 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956,635	895,280	△ 61,335	△ 6.4%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운동기구는 재료비에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치비 제외
- ▸ 데크계단, 데크광장, 데크로드의 경우 기둥, 장선, 보조장선은 목재가공조립 간단구조를 적용하고 상판재는 마루널깔기품을 적용
- ▸ 데크기초의 경우 목재구입 시 규격을 지정하고 결합철물이 없으므로 결합철물 비용은 제외
- ▸ 데크기초 잡철물제작설치품은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품으로 조정
- ▸ 초화류 식재의 경우 식재조건 보통을 양호로 조정
- ▸ 데크설치 등 기초에 대한 설치비는 재료비의 15%를 5%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00고가로 하부 녹화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식재기반조성 : 사질양토부설 2,159㎡
- ▸ 수목식재 : 41,410본
- ▸ 폐기물처리 : 2,159㎡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715,000	641,235	△ 73,765	△ 10.32%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아스콘포장깨기(30cm이상)의 경우 시간당 작업량은 최대치인 4.6㎥/hr 적용하고 보통인부는 보조인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 ▸ 콘크리트깨기(30cm미만)의 경우 시간당 작업량은 최대치인 5.9㎥/hr 적용하고 보통인부는 보조인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 ▸ PE PIPE 설치의 경우 설치품은 파이프 6m를 기준으로 한 품이므로 환산하여 적용
- ▸ 밸브설치의 경우 접합 및 밸브설치품이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 품은 제외
- ▸ 초화류 식재의 경우 식재조건 보통을 양호로 조정
- ▸ 부대공의 경우 각 공종별 기술인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업반장은 제외

❍ 제경비 조정

- ▸ 산재보험료는 2010년 산재보험요율에 의거 조정(3.7%)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00 및 00 고가도로 하부 녹화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식재기반조성 : 1식 ▸ 수목 및 지피류 식재 :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26,409	335,744	△ 90,665	△ 21.2%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아스팔트포장깨기의 경우 시간당 작업량은 600m를 적용

▸ 아스팔트깨기(30cm미만)의 경우 시간당 작업량은 최대치인 5.9㎥/hr 적용하고 보통인부는 보조인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 흙부설의 경우 기계 100% 적용

▸ 조경석 놓기의 경우 유압식 백호우가 이중 계상되어 있으므로 조정하고 조경공은 톤당을 개소당으로 조정

▸ 폐기물처리비의 경우 수치착오부분 수정하여 처리물량 조정

▸ C챤넬은 배관 등의 부속품으로 배관설치 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품 제외

▸ 솔라집전판 및 접속함 품은 Pole 설치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 제경비 조정

▸ 퇴직공제 부금비는 5억이상 공사 시 적용하므로 제외

▸ 기타경비의 경우 토목공사를 적용하였으나 조경공사요율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OO OO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수목식재 : 교목(가시나무 등 8종 944본), 관목(광나무 등 11종 91,990본), 지피, 초화류(꽃창포 등 21종 185,285본)
- ▸ 시설물설치 : 막구조 파고라 등 307점, 마사토포장등 17,472㎡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146,000	3,512,725	△ 633,275	△15.27%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가설사무소와 창고는 조립식 건물로 설계하였으나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실로 변경하여 조달청가격의 손율 적용하고 현장도착도이므로 운반비, 설치인력품은 제외
- ▸ 가설사무소 비품비는 공사제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제외
- ▸ 잔디식재는 평떼품을 적용하였으나 줄떼품으로 조정
- ▸ 수목운반의 경우 기계(굴삭기)와 트럭을 조합하여 산출하였으나 실제 사용하는 트럭크레인으로 조정
- ▸ 토양개량제 투입량은 설계지침에 의거 조정
- ▸ 초화류 식재의 경우 식재조건 보통을 양호로 조정
- ▸ 의자 및 운동기구는 재료비에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치비 제외
- ▸ 포장경계석설치, 잔토처리, 화강석판석붙임 품은 표준품셈의 의거 조정

❍ 제경비 조정

- ▸ 기타경비의 경우 토목공사를 적용하였으나 조경공사요율 적용
- ▸ 조달수수료는 조달수수료율표에 의거 조정(단가 0.54%)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노약자 및 장애인 보행로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보행로 조성: L=273m, B=2m
- ▸ 수목식재 : 동백나무 외 10종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63,300	420,000	△ 43,300	△9.35%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잔토처리의 경우 기계 100% 적용
- ▸ 포장절단의 경우 1차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차로 기준으로 조정
- ▸ 무근콘크리트깨기(30cm미만)의 경우 시간당 작업량 최대치인 5.9㎥/hr 적용
- ▸ 터파기 인력의 경우 절취품을 적용
- ▸ 되메우기의 경우 기계 100% 적용
- ▸ 자연석쌓기의 경우 전석쌓기품을 적용하여 산출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OOO 대체녹지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목식재 : 3,671본,　　▸ 휴게시설 설치 :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822,630	698,253	△ 124,377	△15.12%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성토작업 시 굴삭기 경비산출은 양질의 마사토를 성토하는 작업 임으로 버킷 계수(K) 0.9→1.1, 작업효율(E) 0.75→0.9, 1회사이클시간(cm) 20→18로 조정

▸ 조경수목(교목)의 할증 10% 제외

▸ 수목식재품 및 비료량은 설계지침에 의거 규격별로 조정

▸ 수목운반비는 1대당 적재량을 본당 적재량으로 환산하여 적용

▸ 가설도로 설치 노무비 일위대가 금액 오기사항 조정

▸ 급수전배관공사 시 노무비 중 용접공은 불필요함으로 배관공과 보통인부만 적용

❍ 제경비 조정

▸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거 조정

▸ 조달구매 물품에 대한 수수료 누락부분 반영(0.54%)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4 전기분야

00경관조명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 경관조명 설치 : 114개
- ▸ 배관 및 배선 :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80,000	154,000	△26,000	△14.55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AL 덕트(100×50) 설치 품 조정
  - 『전기품셈』 5-7①항에 의하여 기본공량의 70% 적용
- ▸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품 가격을 별도 계상
  - 경관조명 브라켓은 부속품으로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제외

❍ 제경비 조정

- ▸ 관급자재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는 [(재+직·노)×요률+기초액]×1.2와 [재+직·노+관급비(부가세 제외)]×요률+기초액을 비교하여 적은 값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OO터널구간 비상조명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형광등기구 설치 : 339세트

▸ 배관 및 배선 :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51,000	427,000	24,000	5.34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작업 공정을 판단하여 할인율 적용

– 터널등기구(339세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동일하게 반복 설치하는 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품셈』 5-25⑩항에 의하여 기본공량의 90% 적용

▸ 애자배선 공사에 대한 할증률 조정

– 터널내 애자배선 공사에 있어 『전기품셈』 5-10(옥내배선)①항의 애자배선 은폐공사 할증 50% 적용 하였으나 이것은 건축물 옥내배선 애자지지 간격(1~2m) 기준이며 본 공사는 애자지지 간격이 10m 이므로 할증률을 10%으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0하수종말처리시설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 하수처리장 전원공급 설비 : 1식
- ▸ 수배전반 설치 : 1식
- ▸ 원격감시제어 설비 :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373,000	1,187,000	△186,000	△13.55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시공성이 우수한 난연 CD 전선관으로 변경 적용
- – 콘크리트 매입 배관으로 HI-PVC 전선관을 적용 하였으나 기능은 동일하며 시공성이 우수한 난연 CD 전선관으로 변경
- ▸ 케이블트레이 부속자재 수량 산출 오류로 수정
- – J CONEECTOR 및 G.B JUMPER 수량을 1개/1m으로 계상하였으나 케이블트레이 생산 단위 길이가 3m이므로 1개/3m으로 수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OO상수도 인입시설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전기설비 : 1식, 계측제어설비 :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349,000	1,225,000	△124,000	△9.19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현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 설치

– 무인가압장의 제어실에 불필요한 에어컨설비 제외

▸ 수배전반 제작 설치에 따른 예비자재 및 공구의 일률적인 반영은 불합리

– 예비자재 및 공구는 추후 유지관리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별 구입함이 효율적이므로 제외

▸ 불필요한 경비 제외

– 설비운영에 대한 교육은 시방에 의해 제작자가 당연 시행해야하므로 교육비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0건축물 건립 통신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 통신설비 : 1식
- ▸ 방송설비 :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782,000	752,000	△30,000	△3.87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스피커설치에 천정타공 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계상으로 제외
- ▸ Hi-Tec Tray의 Joiner Set 품을 계상하였으나 본체 설치 품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제외
- ▸ 단자함의 옥내 설치시 통신케이블공을 통신내선공으로 적용 (통신품셈 3-4-4①항)
- ▸ 옥외스피커(20W)는 노출 설치이므로 『통신품셈』 5-3-3"다"②항에 따라 기본품의 60%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통신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0연결도로 건설 통신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통신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 1식, 전광판 설비 :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991,000	2,761,000	△230,000	△7.68

❑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공사에 적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은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옥내 배관은 『통신품셈』 3-3-1(구내통신배관) 적용 및 옥외 배관은 3-2-3 (합성수지관 부설)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정

▸ 광케이블포설에 따른 접속시험 품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최종시험은 당연한 부대시험으로 제외

▸ 강관주 건식에 따른 현장 교통정리 인원으로 보통인부 0.2인을 가산 하였으나 본 현장은 무관하므로 제외

❍ 실적공사비 적용

▸ 케이블 (F-CV 6㎟/2C), F-FR-8(10㎟/2C, 6㎟/2C, 4㎟/2C)설치,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5 기계분야

00주민센터 냉·난방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00 주민센터 건립공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40.15㎡

▸ 기계설비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단위공종)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90,666	62,123	△28,543	△ -

❑ 심사내용

❍ 공사비 조정

▸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과다설계된 시스템 냉난방기 물량(사양) 조정 및 단가 재산정

① 소비전력(실외기) : 당초 62KW/h → 변경 33.5KW/h

② 실내기(카세트) 사양 및 대수조정

- 당초 4WAY카세트 28대→변경 4WAY카세트 11대, 1WAY카세트13대

③ 기타부대시설 1식 물량 및 단가조정

- 공사비①+②+③ 90,666천원 → 62,123천원(감28,543천원)

※ 일반업무용 영조물의 경우 1㎡당 냉방부하 120~150㎉/h를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외부전문가 자문

00운동장 기계설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종합운동장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204.5㎡

▸ 기계설비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16,737	89,024	△127,713	△ -

❑ 심사내용

❍ 공사비 조정

▸ 종합운동장 잔디살수 설비의 과다계상된 조경용 배관공사비 1식 견적단가를 원가계산하여 조정

- 공사비 120,000천원 → 48,000천원(72,000천원 감액)

▸ 원거리에 있는 환기휀설비 5~6대를 중앙제어시스템 적용한 것을 공사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개별제어방식으로 변경 조정

- 공사비 96,737천원 → 41,024천원(55,713천원 감액)

❑ 심사근거 및 기준

❍ 200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09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0도시철도 살수배관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기계설비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49,030	356,670	△92,360	△20.6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품셈 1-1-1(강관배관)의 기준에 의거 옥내배관으로 적용한 것을 현장여건상 옥외배관(암거내)으로 적용하여 품을 10% 감

▸ 기타 자재단가 조정 등

❑ 심사근거 및 기준

❍ 200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09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0공동주택 설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기계설비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438,900	405,790	△33,110	△7.5

❑ 심사내용

❍ 적용품 및 자재단가 조정

▸ 가스공급관 기밀시험품을 적용하였으나 복도횡주관교체는 내관기밀시험품 적용 등

- 공급관기밀시험 79,470/구간당 → 내관기밀시험 11,125원/구간당 (22,119천원 감)

❑ 심사근거 및 기준

❍ 200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09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0도시철도 설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기계설비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854,430	1,739,970	△114,460	△6.2

❑ 심사내용

❍ 이중계상된 공사비 조정

▸ 천정 철거공사비를 현장여건상 같은위치에 시공되지만 공종별(공조닥트, 자동제어, 급수배관, 소방배관)로 각각 이중계상된 사례로서 공조닥트와 자동제어만 계상

– 공사비 37,122천원 감액

❑ 심사근거 및 기준

❍ 200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09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6 용역분야

○○○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추진방안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1식
- ▸ 개발계획수립 1식
- ▸ 경제자유구역지정 변경 1식,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900,900	893,000	△ 7,700	△ 0.85

❑ 심사내용

❍ 제경비 산출 조정

- ▸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시 제경비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조정(115→110%)

❍ 측정수수료 산출 부적정

- ▸ 사전환경성검토 시 환경측정시험 분석비는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측정수수료를 반영하였으나 국립환경연구원 고시단가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환경부령 제328호)

❍ 환경영향평가비용산정기준(환경부고시2008-224호)

○○○○연결도로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전면책임감리용역

- ▸ 교량 및 평면도로 L=2.44km
- ▸ 지하주차장 1식
- ▸ 가로공원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9,484,000	8,463,000	△ 1,021,000	△ 10.77

❑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 산출 조정

- ▸ 제경비 및 기술료는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한 범위내에서 하한치로 조정적용
  - 제경비115→110%, 기술료 30→20%
- ▸ 현지차량운행비와 사무원은 시역내 공사이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적용
  - 승합차 2→ 1대, 사무원 2→ 1인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호)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수립
- ▸ 영향권내 환경질과 동식물상 등 현황의 조사 및 분석
- ▸ 공사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분석
- ▸ 환경영향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983,412	1,882,232	△ 101,180	△ 5.10

❑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 산출 조정

- ▸ 환경부 대행비용산정기준에 의한 항목별 소요인력은 중점항목의 경우 100%을 적용하고, 일반항목의 경우 20~60%범위내에서 적용할수 있으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조정 적용함이 타당
- ▸ 육상·육수 동식물정밀조사비는 추정조사비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필요 경비로 조정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9-269호)

○○○ 생태공원 지원시설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을숙도, 맥도, 삼락, 화명둔치 지원시설 실시설계

▸ 습지 및 숲 조성, 산책로, 주차장, 캠핑장설치, 사계절 꽃단지 진·출입로 등 생태공원 지원시설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000,000	955,308	△ 44,692	△ 4.47

❑ 심사내용

❍ 제경비 등 산출 조정

▸ 현황조사, 지형현황측량, 횡단측량, 종단측량, 관련계획 검토의 기술료는 기준범위내에서 조정적용(30→ 20%)

▸ 지형현황 측량비는 우리시 항공측량 성과물인 수치지도를 활용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측량 및 성과 등의 정리품만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공업지역 재생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개발계획수립 기본구상 수립용역

▸ 공간적 범위 : 사상공업지역 및 재생사업 필요지역(6,620천㎡)

▸ 내용적 범위 : 사상공단 재정비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수립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600,000	568,000	△ 32,000	△ 5.33

❑ 심사내용

❍ 인건비 등 산정 부적정

▸ 타당성검토, 개발기본계획 등 직접인건비 산정시 보조원을 중급기능사(134,427원)로 반영하였으나 용역내용상 초급기능사(106,708원)로 가능하므로 조정

❍ 보고서 인쇄비 단가 등 조정

▸ 보고서 및 설문서 작성은 경인쇄비로 반영하였으나 제본 및 복사비로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0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

0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
- ▸ 사전환경성 검토(행정계획)
- ▸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도서 작성 및 협의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67,000	239,727	△27,273	△10.21%

❑ 심사내용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내역조정**

▸ 환경영향분석 검토시 소요인력은 중요도에 따라 20~100%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괄 100%을 적용하여 과다하므로 중요도에 따라 소요인력 조정

❍ **제경비, 기술료 조정**

▸ 사전환경성검토, 매립기본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현황측량비 등에 제경비를 115%-120%로 기술료를 25%-30%를 적용하였으나 제경비는(직접인건비의 110-120%)→110% 기술료(직접인건비 20-40%)→20%를 적용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검토

❍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검토

00일원 침수예방 기본계획수립 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 ▸ 하수관거실태조사 1식
- ▸ 침수예방 기본계획수립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20,000	200,073	△19,927	△9.06%

❑ 심사내용

❍ 하수관 CCTV조사비 조정

- ▸ 하수관 CCTV조사비는 "201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21-5의 기준에 의거 운전사는 삭제하고 잡재료비는 주재료비× 20%→10%로 조정

❍ 하수관 육안조사비 조정

- ▸ 하수관 육안조사 인원편성은 5인/팀→4인/팀으로 조정하고 작업량은 원형관 300m/일→400m/일 암거 400m/일→500m/일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CCTV조사비 적정 여부 검토

❍ 하수관 육안조사비 품 적정 여부 검토

00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 연구시설 A = 82,222㎡

▸ 도로개설(중로2류 484호선) L=206m, B=15m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338,000	308,000	△30,000	△8.88%

❑ 심사내용

❍ **측량비 조정**

▸ 2급 수준측량의 표준작업량은 1/15→0.26/15로 조정 적용

▸ 현황측량의 표준 작업량의 축척계수
(S)=1(1/500)→0.65(1/1,000)으로 조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비 조정**

▸ 검토항목중 수문 및 해상의 특성, 토질조사,입지유형별 검토 항목 등 중복 및 불필요한 항목 조정

❍ **지반조사 비용 조정**

▸ 지반조사 보오링 폐공처리시 지하수개발 폐공품을 적용하였으나 일반 모래 채움으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측량비 품 조정내용 검토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검토

00항 정비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 ▸ 외곽시설(방파제) 신설 L=150m(기존 228m)
- ▸ 접안시설 L=178m
- ▸ 수산물유통, 판매시설 A=99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57,390	144,900	△12,490	△7.94%

❑ 심사내용

❍ **평가항목별 분석 수수료 조정**

- ▸ 환경질 측정의 평가항목별 분석수수료는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의한 수수료을 비교하여 적정하게 조정

❍ **직접인건비 조정**

- ▸ 수환경조사(수질) 및 수환경조사(해양환경)의 항목별 소요인력 적용비율 조정(40%→30%)

❑ 심사근거 및 기준

❍ 시험의뢰 수수료 검토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검토

OO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 연구시설 A = 82,222㎡

▸ 도로개설(중로2류 484호선) L=206m, B=15m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338,000	308,000	△30,000	△8.88%

❑ 심사내용

❍ **측량비 조정**

▸ 2급 수준측량의 표준작업량은 1/15→0.26/15로 조정 적용

▸ 현황측량의 표준 작업량의 축척계수

(S)=1(1/500)→0.65(1/1,000)으로 조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비 조정**

▸ 검토항목 중 수문 및 해상의 특성, 토질조사,입지유형별 검토 항목 등 중복 및 불필요한 항목 조정

❍ **지반조사 비용 조정**

▸ 지반조사 보오링 폐공처리시 지하수개발 폐공품을 적용하였으나 일반 모래 채움으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측량비 품 조정내용 검토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검토

00 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 단지조성공사 : A=548,500㎡(1공구A=488,880㎡, 2공구A=59,620㎡)

▸ 조경공사, 전기공사, 신호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기타 부대공사 등의 전면책임감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3,688,000	3,474,500	△213,500	△5.79%

❑ 심사내용

❍ **주재비 산정 조정**

▸ 상주감리원 주재비는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인 경우 관내업체의 상주 감리원의 주재비가 필요 없으므로 주재비 30%중 관내업체 비율은 삭감 조정 (상주감리원 인건비의 30% → 20%)

❍ **초과근무비 산정 조정**

▸ 감리원이 초과근무시 대체 휴무를 시행하고 수당지급은 삭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검토

❍ 근로자 초과 근무비 지급기준 검토

00 특화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 면적 : 601,500㎡

▸ 기본 및 실시설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699,819	1,516,654	△183,165	△10.78%

❑ 심사내용

❍ **지반조사 비용 조정**

▸ 시료채취 및 보오링품이 "2010 건설공사 표준품셈"기준보다 작업소요 인력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표준품셈 20-1-2(천공)품에는 기술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계상 부분 삭제

❍ **조사비 조정**

▸ 조사비로 산정된 용지도(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토지용계획서 확인원 등) 발급비용은 공용발급으로 조정

❍ **부가세 이중계상 조정**

▸ 세부항목에 부가세를 포함하고 총괄표에 이중으로 계상하여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반조사 표준기준 검토

❍ 부가가치세 적용 적정성 검토

00 단지 환경 및 교통영향분석 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 녹색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A = 601,50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330,000	304,000	△26,000	△7.88%

❑ 심사내용

❍ 환경질 조사비 조정

▸ 환경질 조사는 측정수수료임으로 분석인건비 삭제 조정

❍ 교통영향평가 총인력산정 할증률 조정

▸ 인력 할증의 지역별 가중치 산정시 도시교통정비지역(1.0)으로 구분하였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교통 권역(0.7)으로 분류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환경질 조사비 이중계상 여부 검토

❍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검토

OO 상습해일 피해방지 기본 및 실시계획용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 외곽시설 설치 120m× 4개소

▸ 매립 A=18,830㎡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951,600	1,740,878	△210,722	△10.80%

❑ 심사내용

❍ **사전재해영향검토, 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조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 어업피해조사비, 해역이용협의서 작성비에 인력투입이 중복된 항목 조정

❍ **문화재 지표조사비 조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에 의거 대상 제외

❑ 심사근거 및 기준

❍ 문화재보호법 대상기준 검토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검토

00연약지반 침하안정관리용역

❑ 용역개요

❍ 용역규모 :

▸ 연약지반처리면적(A=394,439㎡, 전체 A=394,439㎡)

▸ 연약지반침하안정관리용역 1 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747,966	1,669,754	△78,212	△4.47%

❑ 심사내용

❍ **연약지반 재해석 단면 조정**

▸ 연약지반 재해석을 전체 단면(Zone)에 대해 계획하였으나 계측 결과에 의해 2단면에 대하여 실시함이 타당

❍ **계측 보조인력 조정**

▸ 상주인력 중 계측 보조인력이 과다함으로 3인→2인으로 조정

❍ **주재비 조정**

▸ 계측 상주인원 중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인 경우 지역업체의 상주인원의 주재비는 필요 없으므로 주재비 30%중 지역업체 비율은 삭감 조정 (상주 인건비의 30% → 20%)

❑ 심사근거 및 기준

❍ 연약지반 단면해석 기준 검토

❍ 계측인력(상주)의 투입기준 적정성 검토

00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도시관리계획변경(문화시설) 결정 1식
- ▸ 현황측량, 환경성 검토,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검토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56,420	135,630	△ 20,790	△ 13.29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 도시관리계획변경(문화시설) 결정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사유서 등은 "000장기발전계획" 등 기존자료 활용을 감안하여 그 율을 조정 (30~50% → 20%) 적용함.
- ▸ 교통성검토 중 서론 및 개요, 교통시설현황분석, 교통시설계획은 "000장기발전계획" 등 기존자료 활용을 감안하여 그 율을 조정 (50% → 20%) 적용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국토 및 도시계획 등)

❍ 2009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00공사 감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감리용역 1식
-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5층, 연면적 3,043.92㎡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59,046	157,150	△ 1,896	△ 1.19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 감리 월 근무일수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에 의거 월 감리일수를 조정(22.24 → 22.0일/월) 적용함.

❑ 심사근거 및 기준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69호)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OO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장 1.1㎞, 폭 80~100m

▸ 교통대책수립, 지형측량, 실시설계 :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98,280	255,650	△ 42,630	△14.3%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손해배상보험료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실시설계적용요율을 적용하고 초과일수 없으므로 가산요율은 제외

▸ 지형현황측량비는 우리시 항공측량 성과물인 수치지도를 활용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측량 및 성과 등의 정리품만 적용

▸ 종단 및 횡단측량은 불필요한 공정이므로 삭제하고 누락된 지장물 조사비 반영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직접인건비 산정 시 할증률은 산정기준에 의거 조정(1.0 →0.42)

❑ 심사근거 및 기준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국토 및 도시계획, 조경 및 관광레저계획)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000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본조사측량, 토질조사, 입목축적조사,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설계 1식 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689,102	653,358	△35,744	△5.19%

❑ 심사내용

❍ 적용품 조정

▸ 지형현황측량비는 우리시 항공측량 성과물인 수치지도를 활용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측량 및 성과 등의 정리품만 적용

▸ 자연시료채취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맞추어 조정

▸ 실내시험비는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기준에 의거 조정하고 수수료임으로 직접인건비 항목 제외

▸ 입목축적조사 수수료는 산림청 숲 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적용하여 조정

▸ 교통영향분평가 제경비, 기술료는 대행비용 산정기준 범위내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국토 및 도시계획, 조경 및 관광레저계획)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교통공사 본사청사 청소용역

❑ 사업개요

- ❍ 용역대상 : 본사청사 A동 및 B동 전체
- ❍ 청소면적 : 총 32,442㎡
- ❍ 용역기간 : 2010. 3. 1 ~ 2010. 12. 31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66,610	153,840	△ 12,770	△ 7.67%

❑ 심사내용

- ❍ 인건비 조정
  - ▸ 연차수당 15일을 10일로 조정(용역기간 10개월)
  - ▸ 퇴직급여충당금 삭제

❑ 심사근거 및 기준

-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화전지구 사업장 관리·경비용역

❑ 사업개요

❍ 용역내용

- ▸ 화전지구 사업장 관리경비업무 전반
- ▸ 3개 초소, 9명 1일 3교대 24시간 근무, 12개월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0. 12. 31까지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16,750	183,480	△ 33,270	△ 15.35%

❑ 심사내용

❍ 인건비 조정

- ▸ 총9명이 1일 3교대 근무하므로 일 3명분의 야간근무수당 가산
- ▸ 휴일근무수당 삭제
- ▸ 감시적 근로에 해당되므로 임금의 80% 산정
- ▸ 연차수당 15일분 가산

❍ 경비 조정

- ▸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잘못 적용된 요율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제1항)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제2항)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 사업개요

❍ 용역규모 : ○○공원 시민체육공원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 ○○구 ○○동 정비사업 부지 내 일부구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24,510	108,000	△16,510	△13.3

❑ 심사내용

❍ 현장 적정조사 인원 조정

▸ 발굴조사지역의 지형, 토질, 조사조건, 유물내용, 유구식별 난이도, 유구내용 감안하여 조사일수 조정

▸ 경비 : 조사원여비 및 유물정리비, 현장운영비(굴삭기)를 조사일수에 맞게 조정

❍ 법정 경비 재산정

▸ 각종 보험(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임금채권보장기금)요율, 퇴직적립금 추가 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788(2010.5.11)]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도로·터널·건물 청소 및 경비 용역

❑ 사업개요

❍ 용역규모 : ○○공단 청소 및 경비 용역

▸ ○○공단산하 ○○개 사업장에 대한 청소 및 경비용역

❍ 발주방법 : 공개경쟁입찰(1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3,957,169	3,865,873	△91,296	△2.3

❑ 심사내용

❍ 노무비 등 조정

▸ 제조부분의 보통임부임 적용, 작업일수, 청소차량운행 횟수, 청소운행구간 조정, 차량유지비(내구연한, 수리비)

❍ 법정 경비 재산정

▸ 각종 보험(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임금채권보장기금)요율 조정 및 퇴직적립금 미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788(2010.5.11)]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OO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 ○○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00,000	186,816	△13,184	△ 6.59

❑ 심사내용

❍ 여비 조정

▸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2009.4.30대통령령제21452)'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거 여비 조정

▸ 국외 여비중 숙박비 조정

❍ 경비 조정

▸ 설문조사비에 산정된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용인부임의 단가를 적용

▸ 회의비는 유사 사례의 학술용역의 회의비 적용

❍ 인쇄비 조정

▸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에 맞게 재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788,2010.5.11)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부수, 매수를 기준으로 견적처리된 인쇄비를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에 맞게 조정.

00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용역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환승지원시설 기본구상
- ▸ 재무적 타당성 분석
- ▸ 구 병무청 부지 활용방안 및 홍보동영상 제작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00,000	188,255	△16,745	△8.37

❑ 심사내용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므로 본 용역은 과업기간이 6개월로 퇴직급여충당금 삭감

❍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이 월급여액의 40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본용역은 과업기간이 6개월이므로 당초 400%를 200%로 조정

❍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책임연구원은 1호, 연구원, 연구보조원은 2호, 부산-서울기준으로 적용

❍ 유인물비는 종합, 요약 보고서의 경우 16절 중질지 적용하였으나 통상 보고서의 경우 10절(A4) 백상지(미색모조지)를 사용하므로 당초 16절 중질지를 10절 백상지로 조정하고 조달청 경인쇄 기준요금에 의거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계상

❍ 회의 부대비용 : 회의장 다과구입 1인당 5천원, 회의 후 중식 1인당 10천원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7 구매분야

부산문화글판 제작 설치

❑ 사업개요

- ❍ 설치위치 : 시청사 12, 13층 외벽(중앙로변)
- ❍ 규격 : 27m × 12m
- ❍ 목적 : 문화적 향기가 풍기는 시청사로의 디자인 모색 및 시민과의 감성적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부산문화글판' 프레임과 공모 홍보 문안을 시청사 외벽 12, 13층에 제작 설치하기 위함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3,702	21,940	△ 1,762	△ 7.43%

❑ 심사내용

- ❍ 공사, 제조부분 분리 각각의 노임 적용
  - ▸ 몰딩설치, 글판설치 등은 공사 노임 단가 적용
  - ▸ 몰딩제작은 제조 노임 단가를 적용

❑ 심사근거 및 기준

-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도시철도 4호선 노선도 등 정비

❑ 사업개요

❍ 정비종류 및 물량

▸역구내 노선도 : 매표소 상단, 자동발매기 상단, 스크린도어 상단, 종합안내도 내 관광 노선도 등 2,093개

▸전동차 노선도 : 전동차내, 지도형 등 5,784개

❍ 주요내용

▸제·개정된 확정 역명 및 병행표기역명 반영

▸외국인 편의도모를 위한 중국어, 일본어 추가 표기

▸김해경전철 노선 표기, 국철 등 환승표기 반영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63,067	142,110	△ 20,957	△ 12.85%

❑ 심사내용

❍ 직접노무비 조정

▸ 상여금 400%를 1개월 남짓한 사업기간 감안하여 100%로 조정

▸ 퇴직급여충당금 삭제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과집진기 여과백 제작구입

❑ 사업개요

❍ 제작규모 : ○○공단 여과집진기 여과백 제작구입

▸ 수량 : 700개

▸ 규격 : Φ150×5,000㎜, 재질 : 테프론+표면테프론Membrance

❍ 입찰방법 : 실적제한, 공개경쟁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38,600	130,900	△7,700	△5.56

❑ 심사내용

❍ 제작·설치에 따른 단가의 적정성 검토

▸ 조달청 입찰가격, 시중물가지, 제작업체 견적가격 등 비교

❍ 재질검사 항목 중 누락된 표면처리상태 시험항목 추가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788(2010.5.11)]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도시철도 차량 유지·보수용 부품 구입

❑ 사업개요

❍ 구입규모 : ○○공사 도시철도 부품구입

▸ 도시철도(1·2·3호선) 유지, 보수용 외자부품 구입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지역제한)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18,630	207,260	△11,366	△5.0

❑ 심사내용

❍ 물품 제조구입 단가 조정

▸ 가격 재조사(수입업체 견적가격, 타 지역 조달입찰 가격 및 낙찰율, 금년도 유사품목 구입 단가)

▸ 년도별 구입가격 및 기준 환율

❑ 심사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788(2010.5.11)]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OO신형발매기 구매·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공단 신형발매기 설치

- ▸ 신형발매기: 80대
- ▸ 네트워크공사 및 발매프로그램 구축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146,780	134,975	△11,805	△ 8.04

❑ 심사내용

❍ 네트워크 물품단가 조정

- ▸ 네트워크 공사에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 공표가격, 시중물가지, 견적 등 낮는 단가로 조정

❍ 적용품 조정

- ▸ 네트워크 장비에 삽입되는 칩(Chip)의 설치품 제외
- ▸ UPS장비는 설치를 포함하므로 별도의 설치품 제외
- ▸ 정보통신공사품셈의 노무비로 재산정

❍ 프로그램 개발비용 재조정

- ▸ M/M(Man/Month)방식으로 설계된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FP(Function Point)방식으로 재설계

❑ 심사근거 및 기준

❍ 2010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2010-52호,2010.02.26)

OO시설 의료장비 및 주방용품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의료장비 및 주방용품 구입

- ▸ 의료장비 : 저주파 자극기 외 13종
- ▸ 주방용품 : 보온밥솥외 10종

❍ 사업기간 : 2010년 4월중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요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율(%)
21,478	13,319	△8,159	△38.0

❑ 심사내용

❍ 물품단가 조정

- ▸ 저주파 자극기와 간섭파 치료기의 경우 생산업체를 통해 부산지역 대리점 연락처를 확인하여 시장 거래가격 재조사
- ▸ 그 외 의료장비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다수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가격 비교하여 시중 거래 적정 가격으로 조정

❑ 심사근거 및 기준

❍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검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Ⅵ 부 록

1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소관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제정 2008. 12. 3 규칙 제361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공법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과·담당관 및 팀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라. 구·군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부산광역시의료원
   사. 시 출연기관(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을 출연한 기관은 제외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구·군에 대하여는 시비 또는 국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으로 한정하고, 구·군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구·군의 자체사업을 그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공사: 추정금액 5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1억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제2조제3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발주부서는 1억원) 이상
4.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로서 한 번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 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시장은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 절감예산액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그 내역을 달마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발주부서의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설계변경 심사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용역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 공 사 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폐기물처리비: - 이 설 비:	·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폐기물처리비: - 이 설 비:	
재원구성	· 국비: 천원(%) · 시비: 천원(%) · 기타:구·군비 등 천원(%)		
설 계 자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 "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 의 순으로 작성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건 명					
계약금액	천원		설계변경 요청금액	천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 개요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 "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 의 순으로 작성

3. "2"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규모)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재원구성	· 국비: 천원(%) · 시비: 천원(%) · 기타:구·군비 등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기술용역 근거법령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여부	· 대 상 :	· 비 대 상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해당 용역에 한함).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재원구성	· 국비: 천원(%) · 시비: 천원(%) · 기타:구·군비 등 천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기 타			

◦ 물품 사양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사양서, 시방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재원구성	· 국비: 천원(%) · 시비: 천원(%) · 기타:구·군비 등 천원(%)		
제조(수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기 타			

◦ 수리목적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비목	구분		단위	산출금액 수량	산출금액 단가	산출금액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산출금액			계약방법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1", "2"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인)

【별지 제7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인)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10.10.26)]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총칙 ····· 119
제1절 통칙
제2절 추정가격
제3절 예정가격

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 124
제1절 기초금액 작성
제2절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제3장 감정가격·견적가격·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 126
제1절 감정가격
제2절 견적가격
제3절 거래실례가격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 128
제1절 총칙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 153
제1절 실적공사비
제2절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산정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 157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절 원가검토기관

제7장 보칙 ····· 161
제1절 특례사항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부 칙 / 162

※ 별첨자료 / 165

별지 제1호서식 제조원가계산서 별지 제2호서식 공사원가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별지 제5호서식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별표1 일반관리비율 별표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별표3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1. 목적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작성, 공사손해보험 가입, 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의 등록 등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성방법

계약담당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2절 추정가격

1.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이나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3절 예정가격

1.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 및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3. 예정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가. 작성절차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예정가격의 결정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5. 예정가격산정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예정가격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기타공사 : 8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4) 시행령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또는 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8.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과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2장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제1절 기초금액 작성

1. 기초금액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1.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내에서 7개, 0%~-3%범위내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2.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2인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3.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

제3장 감정가격·견적가격·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제1절 감정가격

1. 감정가격

감정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의 결정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 또는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절 견적가격

1. 견적가격

견적가격이라 함은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2.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거래실례가격

1. 거래실례가격의 개념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없이 계약담당자가 발주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2. 거래실례가격의 결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나.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가" 또는 "나"에 가격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라.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3.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계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총칙

1. 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기관 및 원가검토기관에 관하여는 제6장의 규정에 의한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노무비 단가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예규에 따라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료비

가. 재료비의 구성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나.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외주가공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다.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라.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마.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노무비의 구성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나.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다. 간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나"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 "나"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마. "다"의 간접노무비는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바. "마"의 간접노무비는 "라"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의 개념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

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7.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사의 원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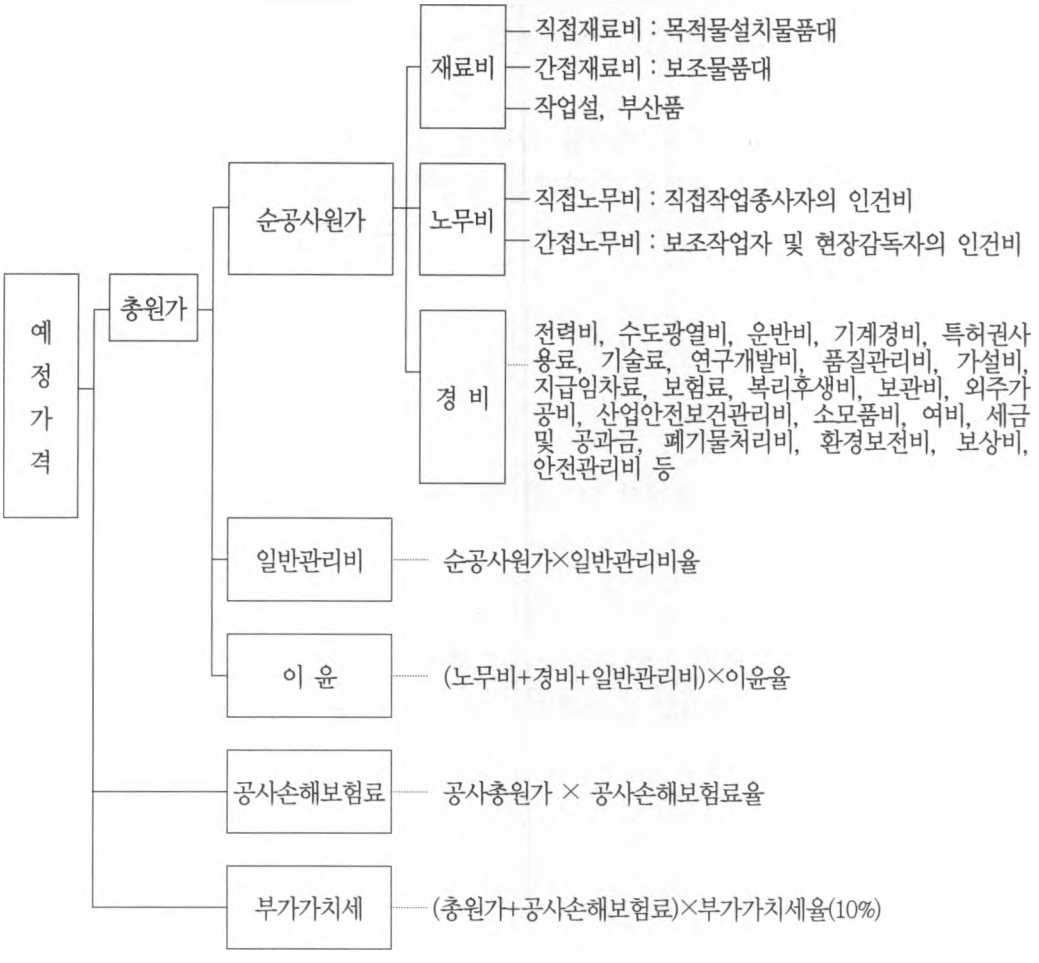

4. 재료비

가. 재료비의 구성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나.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외주가공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다.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라.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마.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4장 제1절 3."과 "제4장 제2절 4."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계상한다.

(2)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②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③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④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3)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상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 사 규 모 별	5억원 미만 5~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4 15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7장 제2절 1."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4장 제3절 9."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복리후생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 및 공과금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장 제2절 4-나-(4)"와 "제4장 제3절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4장 제2절 6."과 같고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 공 식 >

공사손해보험률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10. 공사손해보험 가입

가. 근거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나. 보험의 가입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와 200억이상 공사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또는 길이 500m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이 포함된 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다. 보험가입의 범위

"나"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라. 보험가입금액

(1)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1)"의 순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정한다.

(3)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1)"과 "(2)"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게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바.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1) "나"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완료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게 하여야 한다.

사.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1)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행정안전부 예규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보험료 계상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 또는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의 의무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차.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가 공사손해보험가입한 후에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카. 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질권의 설정·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보험금의 사용

(1)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파.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 및 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4절 학술용역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내용과 같다.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제4장 제4절 1-가-(2)"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과 "(3)"에 의한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3.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인건비

가. 인건비의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인건비의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계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계상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4장 제2절 5-다-(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등

가. 일반관리비의 계상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1.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가"와 "제4장 제4절"의 학술용역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설계감리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행정안전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 제조업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국토해양부, 대한측량협회)
  - · 감리원 임금 공표(국토해양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 SW기술자 노임단가(지식경제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2)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0)
- 고용보험료
  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0)
- 폐기물처리비
  1)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8)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의 이행보증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0)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0)
- 환경보전비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및 별표 15(환경관리비 산출기준)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1)
- 품질관리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7)
- 감가상각비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2절 5-다-(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14)
- 안전관리비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4항, 동시행규칙 제21조의4(안전관리비)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3)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시행령 제83조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6-다-(24)
- 공사손해보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2) 공사계약 일반조건 Ⅳ-4.(손해보험)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3절 9.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1절 실적공사비

1. 실적공사비의 개념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의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 및 표준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산정

1.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의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 식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4장 제3절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에 조정계수와 비목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 식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 × 비목별 요율

(1) 조정계수 : 공사규모(금액), 공사기간에 따라 조정계수 설정

(2) 비목별 요율 : 법정요율로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요율과 동일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4장 제2절 4-다"와 "제4장 제3절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비목별 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제5장 제2절 3"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4장 제2절 6"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6.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공사손해보험료

"제4장 제3절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4장 제3절 10. 공사손해보험 가입"의 규정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8.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원가계산관련기관

제1절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이상(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제6장 제1절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장 제1절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동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절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가.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이상(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로써 별표3의 이공계기술자격기준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상경계로써 별표3의 상경계열자격기준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의한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장 제2절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제6장 제2절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장 제2절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1절 특례사항

1. 특례설정등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자료의 비치 등

1.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수의계약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계상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동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를 준용한다.

2.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가.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시행기준

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장제1절 1-다"와 "제6장제2절 1-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감 가 상 각 비 수 리 수 선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시 험 검 사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별지 제2호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목 \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 부 산 물 등(△)			
		소 계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소 계			
	경비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관 리 비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비 기 타 법 정 경 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까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상의 용역의 내용 및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만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사도 경리관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공종수량×실적단가
간 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규모·기간·종류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산재보험료			[직접공사비] ×계수×율
	고용보험료 (등급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종류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안전관리비 (규모·종류별)			[직접공사비+관급자재] ×계수×율
	기타법정경비 (규모·기간·종류별)			[직접공사비] ×계수×율
	환경보전비 (공사종류별)			[직접공사비] ×율
일 반 관 리 비				[직접+간접] ×율
이 윤				[직접+간접+일반] ×율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 직접공사비 :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간접공사비 : 실적공사비를 일부 공종에 적용하는 경우도 실적공사비 방식에 의해 산정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 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0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724,727원
연구원	월 2,089,283원
연구보조원	월 1,396,617원
보조원	월 1,047,499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10년도 기준단가이며, 2011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별표 3〉

원가계산용역 및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기술자격기준	상경계열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5년이상, 기타 10년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기타 5년이상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